성주군의회 지방공무원 행동강령 규칙안 검토보고서

1. 제 안 자 : 구교강 의원 외 6인

2. 제정이유

「지방자치법」 전부개정('22.1.13. 시행)으로 성주군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면권을 성주군의회 의장에게 부여함에 따라, 성주군의회 소속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지켜야 할 행동준칙을 제시함으로써, 공직사회의 윤리적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자체 규정을 정비하여 청렴한 공직문화를 조성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가.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처리,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등에 관한 사항 (안 제4조~안 제5조)

나. 직무관련 영리행위 등 금지에 관한 사항 (안 제6조)

다. 가족 채용 제한,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관한 사항 (안 제7조~안 제8조)

라. 직무관련자인 퇴직자와의 사전 접촉 시 신고에 관한 사항 (안 제9조)

마. 특혜의 배제,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에 관한 사항 (안 제10조~ 안 제11조)

바. 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 절차 및 인사청탁 등의 금지에 관한 사항 (안 제12조~ 안 제13조)

사. 직위를 이용한 이권개입, 직위 사적이용 및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·청탁 등의 금지에 관한 사항 (안 제14조~안 제16조)

아. 직무관련 정보 이용한 거래 및 공용물의 사적 사용·수익, 사적 노무요구, 부당행위, 금품 등의 수수,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금지 등에 관한 사항 (안 제17조~안 제22조)

자.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및 초과 수령 시 신고방법에 관한 사항 (안 제23조~ 안 제24조)

차. 직무관련자와 거래신고, 경조사의 통지 제한에 관한 사항 (안 제25조~안 제26조)

카. 행동강령 위반 시의 조치사항 (안 제27조~안 제30조)

타. 공무원의 수수금지 금품 등의 신고 및 처리, 기록 보관·관리 등에 관한 사항 (안 제31조~안 제32조)

파. 의회 공무원에 대한 행동강령 교육, 행동강령책임관 지정에 관한 사항 (안 제33조~안 제34조)

4. 참고사항

○ 관계법령 :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, 「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」,「공무원 행동강령」 등

○ 입법예고 : 의견없음(2021. 12. 17. ~ 12. 21.)

5. 검토의견

○ 본 제정규칙안은「지방자치법」전부개정으로 지방의회 인사권이 독립됨에 따라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의 행동강령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제정하는 것으로,

○ 직무 관련 영리행위의 금지, 가족 채용의 제한, 수의계약 체결의 제한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.

○ 법리 검토결과, 관련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자치법규 입안 심사 기준에 합당하며,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본 규칙을 제정·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.